

산 립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미조치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인제군

내 용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제39조에 따르면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르면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 1만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원주시는 ○○○○○○주식회사 대표 ○○○에게 허가된 ‘○○○○ 관광단지’건의 경우, 산지전용 기간(2009. 9 ~ 2018. 12. 31.)이 1년 이상 경과되었으

므로 2014년에 예치한 산지복구비 24,866,960천원과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25호, 2015. 4.)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28,179,952천원과의 차액 3,313,022천원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와 같이 복구비 추가예치금 3,313,022천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제군은 ○○○에게 2006년, 2012년에 각각 허가된 ‘○○○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건의 경우,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2015년도 산지복구비 추가예치를 위해 아래 [표]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와 같이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25호, 2015. 4.)에 따른 1,324,337천원을 산지복구비로 예치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정당복구비 보다 35,557천원 적은 1,302,712천원(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예치(2015. 7. 20.)하게 하였다.

[표]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

시·군	소재지	허가현황			복구비 현황		정당복구비 (천원)	미예치액 (천원)
		기간	면적 (㎡)	수허가자	예치액 (천원)	예치일		
	합계				26,155,740		29,504,289	3,348,579
원주	○○면 ○○리 000와 00	2009.9~2018 .12.31	1,662,230	○○○○○○ 주식회사 대표 ○○○	24,866,960	2014.1.24	28,179,952	3,313,022
	소계		41,899		1,288,780		1,324,337	35,557
인제	○면 ○○리 산00	2006.12.15.~ 2016.12.14	24,624	○○○	757,453	2014.9.17	778,351	20,898
	○면 ○○리 산00	2012.12.13.~ 2016.12.31	17,275	○○○	531,327	2014.9.17	545,986	14,659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부족 예치된 3,313,022천원을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추가예치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수는

부족 예치된 35,557천원을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추가예치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